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동차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,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1182호, 2025.12. 2. 공포, 2026. 6. 3. 및 2026. 12. 3. 시행)됨에 따라,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보의2목 및 보의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보의2. 법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·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	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	500
보의3.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	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	
1) 점검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		4
2) 점검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		4만원에 31일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
3) 점검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		60

같은 호 무목을 부목으로 하고,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무. 법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·광고를 한 경우	법 제84조제5항제10호	10	30	50
---	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

같은 호 부목부터 드목을 각각 우목부터 브목으로 하고, 수목 및 브목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수.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4조제4항제21호의3	50	75	100
므. 법 제6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표시·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,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4조제2항제7호	500	750	1,0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2호의 보의2목 및 보의3목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